



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문조사

< 전문가 대상 설문지 >

안녕하십니까?

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본 조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시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것에 있습니다.

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거,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, 조사결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 형태로 정리될 예정입니다. 더불어 통계법 34조에 의거, 조사내용이 연구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조사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2018년 8월

국가인권위원회 /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

연구책임자 : 이재승(건국대 법학과 교수)

담당자 연락처 : 이용석(공동연구원, 000-00000-0000)

조사일시 : 2018년 ____월 ____일

■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(모두 기입해주세요)

1. 나이 :

만____세 (____년생)

2. 성별 :

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(_____)

3. 종교 :

① 없음 ② 불교 ③ 개신교 ④ 천주교 ⑤ 기타(구체적:_____)

4. 학위 : (학계 전문가만 해당)

- ① 박사 ② 박사과정 ③ 석사 ④ 석사과정

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항목에 표시해주세요.
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, 한 가지 항목에만 표시해주세요.

1. 군복무가 입대자들에게 부담이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(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세요.)

- ① 경력단절 및 자기계발 제한
- ② 부족한 봉급 및 경제활동 제한
- ③ 육설, 구타, 성폭력 같은 가혹행위
- ④ 권위적인 병영문화
- ⑤ 고된 작업과 위험한 훈련
- ⑥ 열악한 생활환경과 사생활 미보장
- ⑦ 가족 및 지인과의 단절을 포함한 통신제한
- ⑧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
- ⑨ 군대 자체에 대한 거부감
- ⑩ 기타 (구체적:_____)

2. '양심적 병역거부'는 종교적·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군사훈련 등 군과 관련된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동을 말하며,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600여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습니다.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?

-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③ 약간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

3.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며,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이 결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?

- ① 전혀 몰랐다 ② 잘 몰랐다 ③ 조금 안다 ④ 매우 잘 안다

4. 대체복무제란 종교적·정치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는

사람들에게 군 복무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지원자가 많아질 것을 우려하여 군복무자에 대한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군이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 대체복무제가 군복무자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?

- ① 전혀 아니다 ② 별로 아니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

5.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?

- ① 염려되는 점이 없음
- ② 복무기간이나 업무강도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대체복무가 또 다른 처벌로 작용할 수 있음
- ③ 젊은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음
- ④ 군복무자가 줄어들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
- ⑤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려는 병역기피자를 양산할 수 있음
- ⑥ 군복무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음

⑦ _____ 기타(구체적: _____)

6. 대체복무제 도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

- ① 대체복무 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 마련
- ②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복무기간
- ③ 군복무자와 형평성을 고려한 업무강도
- ④ 사회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분야 선정
- ⑤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
- ⑥ 군복무자의 처우 및 복무환경 개선 병행 추진

⑦ _____ 기타(구체적: _____)

7. 대체복무 신청은 언제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?

- ① 징집소집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대 전까지
- ② 입대 후 복무 1/3 시점까지
- ③ 복무 중 어느 시기나 가능
- ④ 기타(-----)

8. 대체복무 지원자를 심사하는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?

- ① 합리적인 범위에서 군복무에 비해 대체복무 기간이 길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음
- ② 신청서 심사 (예 : 병역거부 사유서 등)
- ③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(예 : 종교단체 또는 평화단체 가입증명서, 보증인 제도 등)
- ④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 및 대면심사
- ⑤ 기타(구체
적:-----)

9.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심사기구 설치(예 :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등)
- ② 복무분야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관련 행정부처(예 : 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 등)
- ③ 심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원
- ④ 제도설계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또는 병무청
- ⑤ 기타(구체
적:-----)

10. 대체복무 지원자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, 어떤 사람들이 심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

(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3가지 선택해서 표시해주세요.)

- ①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법률 전문가
-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정치학·사회학·심리학·역사학·철학·법

학 등을 전공한 학계 전문가

③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대체복무기관 관계자

④ 종교단체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

⑤ 법무부, 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 등 대체복무제 관련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

⑥ 국방부, 병무청 등 군 관계자

⑦

기

타(구체

적:-----)

11. 대체복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?

(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선택해서 해당 번호에 표시해주세요.)

① 화재, 건물붕괴 등 안전사고나 지진, 태풍, 홍수 등의 자연재해 구호·대응 지원

② 신종인플루엔자, 메르스 등 감염병 대응·예방활동이나 조류독감,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·소독 등 국민건강 보호·증진업무 지원

③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중고 교내 학습활동, 이동, 취식 등 활동 지원

④ 복지관, 주간보호센터, 자활센터, 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업무 지원

⑤ 24시간 운영되는 치매전문 요양시설,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등 교대근무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 업무보조

⑥ 자살시도자 긴급구조 지원,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자살예방관련 전문요원 보조업무

⑦ 산림방재, 대기, 하천, 해양 오염방지 등 환경정화 및 보호, 감시업무 지원

⑧ 구치소, 교도소 등 교정시설 행정업무 지원

⑨ 기타(구체적:-----)

12. 대체복무에 적합한 복무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?

① 합숙 복무

② 출퇴근 복무

③ 배치된 기관의 필요 또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숙 또는 출퇴근 복무

④ 기타(-----)

13. 합숙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?

(※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안에 따라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

병역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.)

- ①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(18개월=1년 6개월)
- ②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(22개월=1년 10개월)
- ③ 육군 병사의 1.5배 (27개월=2년 3개월)
- ④ 육군 병사의 2배, 공중보건의.공익법무관.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(36개월=3년)
- ⑤ 기타(-----)

14.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?

- ① 육군 병사와 동일 기간 (18개월=1년 6개월)
- ② 공군 병사와 동일 기간 (22개월=1년 10개월)
- ③ 육군 병사의 1.5배 (27개월=2년 3개월)
- ④ 육군 병사의 2배, 공중보건의.공익법무관.전문연구요원과 동일 기간 (36개월=3년)
- ⑤ 기타(-----)

15. 위 13, 14번에서 육군 병사보다 긴 기간을 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(둘 다 ①번을 선택한 경우는 16번 항목으로 이동하세요)

- ① 군복무에 비해 국가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이므로
- ② 군복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
- ③ 군복무에 비해 자유로운 생활, 평등한 관계 등 기본권의 제약이 덜할 것이므로
- ④ 군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기 위해
- ⑤ 대체복무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위한 기간 고려
- ⑥ 기타(구체적:-----)

16. 군복무자는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되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.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수행한 사람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예비군훈련까지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간을 더 길게 설계

②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훈련에 준하는 별도의 사회봉사 수행

③ 민방위로 편입

④ 기타(구체
적:-----)

17. 이상의 질문내용 외에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필요하거나 건의할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써주십시오.

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